

# 「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」 수행기관 모집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법 시행령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.

2023. 7. 20.

노 원 구 청



1. 공고기간: 2023. 7. 20.(목) ~ 8. 9.(수) (20일간)

## 2. 참가자격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(건축 또는 종합분야(건축분야 포함))
- 나.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

## 3. 수행항목 및 대상

### 가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

-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 및 인·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## 나.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

-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 및 인·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

## 4.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2023. 7. 20.(목) ~ 8. 9.(수) 18:00

나. 접 수 처: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(담당 조성도, ☎02-2116-0872)

다. 제출서류

- 1)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
- 2)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
- 3)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각 1부
- 4)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라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1) 위치: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, 3층 건축안전센터
- 2) 문의: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(담당 조성도, ☎02-2116-0872)

## 5. 검토 및 수행 기관 등록자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
가. 결정방법

- 검토 및 수행 기관 등록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이거나 제출 서류 적정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

나. 결과발표

- 선정 결과는 '노원구청 홈페이지 → 고시공고'란에 게시되며, 업체별로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 확인하시기 바람

다. 심사기준

- 신청서 등 첨부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선정하며, 선정기준에 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명부 작성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## 6.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

절 차	일 정	내 용
모집공고	2023. 7. 20.(목)	- 노원구청 홈페이지(고시공고) - (사)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(공고)
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	2023. 7. 20.(목) ~ 8. 9.(수)	-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※“신청마감일 내 노원구청 도달분만 유효 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접수서류 검토	2023. 8. 10.(목) ~ 8. 18.(금)	-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
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	2023. 8. 24.(목)	-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 행기관 명부 공개 ('노원구 홈페이지' → '고시/공고'란 게시)

## 7. 기타사항

- 가.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.
- 다. 신청마감일 시간 내 노원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추진일정은 내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마.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(담당 조성도, ☎02-2116-0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'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' 등록 신청서 1부.
- 2. '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' 등록부 1부. 끝.